|  |  |  |
| --- | --- | --- |
| **외국인투자기업 분규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法釋[2010] 제9호《외국인투자기업 분규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을 2010년 5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87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2010년 8월 5일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규를 정확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 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 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울러 재판실천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당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 등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심사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지적한 계약이 인가를 받지 못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의 인가신청 의무조항이나 당해 인가신청 의무로 인해 설정한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당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사항과 관련하여 달성한 보충합의가 이미 인가를 받은 계약에 대해 중대한 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심사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보총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전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또는 실질적인 변경에는 등록자본금, 회사의 유형, 경영범위, 주주의 의무출자액, 출자방식의 변경이나 회사의 병합, 분립, 지분양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과정에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에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인정해야 한다. 당해 계약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속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수속이 필요한 목적물로 출자하거나 합작조건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그 목적물을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에 교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감당한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합리한 기간 내에 등록수속을 수행하였다면 인민법원은 당해 당사자 일방이 출자의무나 합작조건의 제공의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주주가 당해 당사자 일방이 출자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당사자 일방이 주주의 권익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주주가,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 명의변경수속을 지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손실을 조성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심사인가 수속을 이행하지 않아 양수측이 최고하여도 합리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양수측이 계약의 해지 및 양도 측의 양도가액 반환, 그리고 인가수속 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해 빚어낸 실제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수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측이 양도 측을 피고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삼자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일정기간 내에 인가수속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양수측이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효판결이 확정한 기간 내에 인가수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자체로 인가수속을 밟겠다고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인민법원의 발효판결에서 확정한 기간 내에 인가수속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양수측이 별도로 기소하여 계약해지와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손실배상의 범위는 지분의 차액손실, 지분수익손실, 합리한 기타손실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양도 측,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양수측이 이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 인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양수측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 측에게 이미 지불한 양도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양수측이 양도 측에게 이로서 조성한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도 측의 과실 존재여부와 과실의 정도에 근거하여 배상책임 부담여부와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인정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계약에서 양수측이 양도가액을 지불한 후에야 인가수속을 하기로 약정했으나 양수측이 지분양도가액을 지불하지 않고 또한 양도 측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합리한 기간 내에 그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 측이 계약해지와 의무 이행의 지연으로 조성한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수측이 지분양도가액을 지불하지 않아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도 인가수속을 밟지 않고, 양도 측이 양수 측의 지분양도가액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중단하고 양도 측에 기한부 인가수속을 밟도록 명해야 한다. 당해 지분양도계약이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심사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양도 측의 지분양도가액의 지불과 관련한 소송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수측이 실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고 수익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양도측이 양수측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관리활동 퇴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수측이 실지로 경영관리에 참여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관련 원가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양도측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 주주 일방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이외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주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며, 기타주주가 자기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분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하기 상황 중 1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타 주주가 이미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2) 양도측이 이미 지분양도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고 기타주주가 서면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3) 기타주주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당해지분을 인수하지도 않은 경우.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 주주 일바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이외의 제삼자에게 양도하여 기타주주가 자기의 인수우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분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기타주주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수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양도측이나 양수측이 기타주주의 인수우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분양계도약의 무효인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가 채권자와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질권 설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록수속을 하지 않아도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질권 설정계약이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하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을 물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지분에 대한 질권은 등록한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당사자 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방이 실지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한 후, 실지 투자자가 자기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주의 신분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동시에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지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를 하였고,(2) 명의주주이외의 여타주주가 실지투자자의 주주신분을 인정하며, (3) 인민법원이나 당사자가 소송기간에 실지투자자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실지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의 유효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이 무효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실지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쌍방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쌍방이 수익분배를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지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를 상대로 그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수익을 내놓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실지투자자를 상대로 필요한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지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실지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실지투자자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실지투자자가 계약의 해지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7조** 실지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 지간의 약정을 근거로 직접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수익분배 또는 기타 주주권리의 행사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실지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고 명의주주가 소지한 지분이 실지투자액을 초과하여 실지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자기의 투자액을 반환하고 실지투자 상황과 명의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에 참여하여 취득한 수익을 쌍방이 합리하게 분배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확실히 지분포기 또는 지분소지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명의주주가 소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경매, 매각하도록 명하여 그 소득으로 실지투자자의 투자액을 반환하게 하며, 여액은 실지투자자의 실지투자 상황과 명의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한 상황에 따라 쌍방이 합리하게 분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실지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고 명의주주가 소지한 지분이 실지투자액보다 적어 실지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그 소지지분의 현재가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확실히 지분포기나 지분의 계속소지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명의주주의 소지지분을 경매, 매각한 소득으로 실지투자자의 투자가액을 반환하게 명할 수 있다. 실지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의 무효에 대한 명의주주의 과실존재여부와 과실 정도에 근거하여 손실배상책임의 부담여부와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한다.**제20조** 실지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결탁하여 악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국가, 집단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해쳐 그 계약이 무효로 인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하거나, 또는 집단이나 제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 일방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기수단 또는 기타 부당 수단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에 기재된 주주 변경을 신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여타주주의 주주신분 또는 원 지분액의 상실을 초래하여 여타주주가 주주신분 또는 원 지분액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제삼자가 이미 당해 지분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타주주가 권리를 침해한 주주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2조** 인민법원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구의 투자자, 국외에 정착한 중국공민이 대륙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분규사건의 심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시행한 후 1심 단계나 2심 단계에 처해있는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심리를 완료한 사건을 인민법원이 재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一）**法释〔2010〕9号《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一）》已于2010年5月1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8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0年8月16日起施行。二○一○年八月五日为正确审理外商投资企业在设立、变更等过程中产生的纠纷案件，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等法律法规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第一条** 当事人在外商投资企业设立、变更等过程中订立的合同，依法律、行政法规的规定应当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后才生效的，自批准之日起生效；未经批准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合同未生效。当事人请求确认该合同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前款所述合同因未经批准而被认定未生效的，不影响合同中当事人履行报批义务条款及因该报批义务而设定的相关条款的效力。**第二条** 当事人就外商投资企业相关事项达成的补充协议对已获批准的合同不构成重大或实质性变更的，人民法院不应以未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为由认定该补充协议未生效。前款规定的重大或实质性变更包括注册资本、公司类型、经营范围、营业期限、股东认缴的出资额、出资方式的变更以及公司合并、公司分立、股权转让等。**第三条** 人民法院在审理案件中，发现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的外商投资企业合同具有法律、行政法规规定的无效情形的，应当认定合同无效；该合同具有法律、行政法规规定的可撤销情形，当事人请求撤销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四条** 外商投资企业合同约定一方当事人以需要办理权属变更登记的标的物出资或者提供合作条件，标的物已交付外商投资企业实际使用，且负有办理权属变更登记义务的一方当事人在人民法院指定的合理期限内完成了登记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方当事人履行了出资或者提供合作条件的义务。外商投资企业或其股东以该方当事人未履行出资义务为由主张该方当事人不享有股东权益的，人民法院不予支持。外商投资企业或其股东举证证明该方当事人因迟延办理权属变更登记给外商投资企业造成损失并请求赔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五条**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成立后，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不履行报批义务，经受让方催告后在合理的期限内仍未履行，受让方请求解除合同并由转让方返还其已支付的转让款、赔偿因未履行报批义务而造成的实际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六条**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成立后，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不履行报批义务，受让方以转让方为被告、以外商投资企业为第三人提起诉讼，请求转让方与外商投资企业在一定期限内共同履行报批义务的，人民法院应予支持。受让方同时请求在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于生效判决确定的期限内不履行报批义务时自行报批的，人民法院应予支持。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拒不根据人民法院生效判决确定的期限履行报批义务，受让方另行起诉，请求解除合同并赔偿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赔偿损失的范围可以包括股权的差价损失、股权收益及其他合理损失。**第七条** 转让方、外商投资企业或者受让方根据本规定第六条第一款的规定就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报批，未获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受让方另行起诉，请求转让方返还其已支付的转让款的，人民法院应予支持。受让方请求转让方赔偿因此造成的损失的，人民法院应根据转让方是否存在过错以及过错大小认定其是否承担赔偿责任及具体赔偿数额。**第八条**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约定受让方支付转让款后转让方才办理报批手续，受让方未支付股权转让款，经转让方催告后在合理的期限内仍未履行，转让方请求解除合同并赔偿因迟延履行而造成的实际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九条**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成立后，受让方未支付股权转让款，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亦未履行报批义务，转让方请求受让方支付股权转让款的，人民法院应当中止审理，指令转让方在一定期限内办理报批手续。该股权转让合同获得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的，对转让方关于支付转让款的诉讼请求，人民法院应予支持。**第十条**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成立后，受让方已实际参与外商投资企业的经营管理并获取收益，但合同未获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转让方请求受让方退出外商投资企业的经营管理并将受让方因实际参与经营管理而获得的收益在扣除相关成本费用后支付给转让方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十一条** 外商投资企业一方股东将股权全部或部分转让给股东之外的第三人，应当经其他股东一致同意，其他股东以未征得其同意为由请求撤销股权转让合同的，人民法院应予支持。具有以下情形之一的除外：（一）有证据证明其他股东已经同意；（二）转让方已就股权转让事项书面通知，其他股东自接到书面通知之日满三十日未予答复；（三）其他股东不同意转让，又不购买该转让的股权。**第十二条** 外商投资企业一方股东将股权全部或部分转让给股东之外的第三人，其他股东以该股权转让侵害了其优先购买权为由请求撤销股权转让合同的，人民法院应予支持。其他股东在知道或者应当知道股权转让合同签订之日起一年内未主张优先购买权的除外。前款规定的转让方、受让方以侵害其他股东优先购买权为由请求认定股权转让合同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第十三条** 外商投资企业股东与债权人订立的股权质押合同，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或者合同另有约定外，自成立时生效。未办理质权登记的，不影响股权质押合同的效力。当事人仅以股权质押合同未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为由主张合同无效或未生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股权质押合同依照物权法的相关规定办理了出质登记的，股权质权自登记时设立。**第十四条** 当事人之间约定一方实际投资、另一方作为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实际投资者请求确认其在外商投资企业中的股东身份或者请求变更外商投资企业股东的，人民法院不予支持。同时具备以下条件的除外：（一）实际投资者已经实际投资；（二）名义股东以外的其他股东认可实际投资者的股东身份；（三）人民法院或当事人在诉讼期间就将实际投资者变更为股东征得了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的同意。**第十五条** 合同约定一方实际投资、另一方作为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不具有法律、行政法规规定的无效情形的，人民法院应认定该合同有效。一方当事人仅以未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为由主张该合同无效或者未生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实际投资者请求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依据双方约定履行相应义务的，人民法院应予支持。双方未约定利益分配，实际投资者请求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向其交付从外商投资企业获得的收益的，人民法院应予支持。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向实际投资者请求支付必要报酬的，人民法院应酌情予以支持。**第十六条** 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不履行与实际投资者之间的合同，致使实际投资者不能实现合同目的，实际投资者请求解除合同并由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十七条** 实际投资者根据其与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的约定，直接向外商投资企业请求分配利润或者行使其他股东权利的，人民法院不予支持。**第十八条** 实际投资者与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之间的合同被认定无效，名义股东持有的股权价值高于实际投资额，实际投资者请求名义股东向其返还投资款并根据其实际投资情况以及名义股东参与外商投资企业经营管理的情况对股权收益在双方之间进行合理分配的，人民法院应予支持。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明确表示放弃股权或者拒绝继续持有股权的，人民法院可以判令以拍卖、变卖名义股东持有的外商投资企业股权所得向实际投资者返还投资款，其余款项根据实际投资者的实际投资情况、名义股东参与外商投资企业经营管理的情况在双方之间进行合理分配。**第十九条** 实际投资者与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之间的合同被认定无效，名义股东持有的股权价值低于实际投资额，实际投资者请求名义股东向其返还现有股权的等值价款的，人民法院应予支持；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明确表示放弃股权或者拒绝继续持有股权的，人民法院可以判令以拍卖、变卖名义股东持有的外商投资企业股权所得向实际投资者返还投资款。实际投资者请求名义股东赔偿损失的，人民法院应当根据名义股东对合同无效是否存在过错及过错大小认定其是否承担赔偿责任及具体赔偿数额。**第二十条** 实际投资者与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之间的合同因恶意串通，损害国家、集体或者第三人利益，被认定无效的，人民法院应当将因此取得的财产收归国家所有或者返还集体、第三人。**第二十一条** 外商投资企业一方股东或者外商投资企业以提供虚假材料等欺诈或者其他不正当手段向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申请变更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所载股东，导致外商投资企业他方股东丧失股东身份或原有股权份额，他方股东请求确认股东身份或原有股权份额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三人已经善意取得该股权的除外。他方股东请求侵权股东或者外商投资企业赔偿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二十二条** 人民法院审理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投资者、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在内地投资设立企业产生的相关纠纷案件，参照适用本规定。**第二十三条** 本规定施行后，案件尚在一审或者二审阶段的，适用本规定；本规定施行前已经终审的案件，人民法院进行再审时，不适用本规定。**第二十四条** 本规定施行前本院作出的有关司法解释与本规定相抵触的，以本规定为准。 |